

보도시점 2026. 8. 13.(목) 배포 즉시

중노위는 노동조합법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원하청 사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8.13.(목) 한국경제, “지방 정부도 사용자”...중노위 첫 판단 나왔다

- 지방정부도 개정 노동조합법(노란봉투법)에 따른 ‘원청 사용자’가 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첫 판단이 나왔다. 정부가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한 해석 지침과 상충하는 판단이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민간 위탁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.

□ 8.13.(목) 헤럴드경제, 지방정부도 ‘원청 사용자’ 인정...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첫 중노위 판단

-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해 해당 지자체도 노동조합법상 ‘원청 사용자’가 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.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(노란봉투법) 시행을 앞두고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이와 배치되는 판단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.

2. 설명 내용

□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내지 민간업체를 정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- 같은 법 제14조의5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과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 내지 민간대행업체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과 관련,
- 하청노조의 교섭의제가 폐기물관리법령, 부평구청 조례 등 관련 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, 지방의회에서 심의·의결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,
 - 부평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재량에 의거 민간대행업체에 행사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민간대행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중 작업방식에 대해 실질적·구체적인 지배·결정력을 가진다고 결정한 것임
- 고용노동부는 「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」에서,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·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,
- 다만 정부·공공기관 등이 재량권을 갖고 사업 수행 근로자의 구체적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지 여부와 그 영향의 정도, 사업운영 주체가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 사안별로 실질적·구체적 지배·결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
 - 이번 사안 역시 개별 사건에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이므로 해석지침과 상충된다거나, 공공부문에 대한 사용자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	책임자	과 장	강승헌 (044-202-7611)
		담당자	서기관	정장석 (044-202-7615)
	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	책임자	과 장	김범석 (044-202-8231)
		담당자	조사관	김동주 (044-202-8246)

